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공원녹지과-132
등록일자	2015.1.2.
결 재 일 자	2015.1.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공원기획팀장	공원녹지과장	도시환경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
이종무	강성두	하재호	배경섭	01/05 주윤중	
협조자	재무과장 계약팀장	김병회 엄선회			

- 장기미집행 '도시공원 결정의 실효' 대비 -

돌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추진계획



2015. 01. .

강 남 구 (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'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(도시공원 결정의 실효)			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· 장기미집행 '도시공원결정의 실효'에 대비, 區 자체검토 추진			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2015. 區 본예산 확보			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·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일반시민 등			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 〕 〔신규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			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·필요시 서울시 및 타 자치구별 자체시행			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기본계획 용역 수행시 관련전문가 자문예정			

- 장기미집행 '도시공원 결정의 실효' 대비 -돌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추진계획

장기미집행 공원(<u>돌산근린공원</u>)의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(2015.10.1.자)이 예상되므로,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비코자 함.

□ 공원현황

● 위 치 : 강남구 세곡동 산1번지 일대

● 면 적: 98,417㎡ (SK해운 소유 약 70%, 일반 사유지 약 30%)

공원결정(최초) : 1971. 08. 07.(건고 465호)

● 도시계획사항 : 공원, 개발제한구역, 자연녹지지역

□ 현안사항

2015. 10. 1. 이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실효

※ <u>법적근거</u>

- ▶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<도시공원 결정의 실효>
-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<기산일: 2015년 9월 30일>

추진계획

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15. 9. 30일까지

용역범위 : 공원조성 기본계획(최초) 수립

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
입찰참가 자격

-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

건설부문(조경, 교통, 구조, 도시계획, 토질·지질) 신고를 필하고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

- 또는「기술사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

● 예 산 액: 70,000천원(구비)

● 예산과목 : 공원녹지과, 도시개발, 공원조성및정비, 돌산근린공원

기본계획용역, 시설비및부대비, 시설비

□ 추진일정

② 2015. 01. : 계약심사(재무과) 및 일상감사(감사담당돤)

② 2015. 01. :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발주 및 계약

② 2015. 02.~09. :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시행

☞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심의, 지형도면 고시 등

□ 기대효과

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 방지

●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등

【도시계획도 및 현황사진】

